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, 토지업무, 교육훈련 전담인력 등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승인정원과,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회 전문위원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로 조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,487명에서 1,499명으로 12명 증원(안 제2조)
 - 구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: 1,487명 → 1,499명(증12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62명 → 1,472명(증10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5명 → 27명(증 2)
- 증원되는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명시(안 별표1)
 - 정원증원
 - 의회 전문위원 : 2명(5급1, 6급1)
 -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: 4명(6급1, 7급2, 8급1)
 - 교육훈련 전담인력 : 2명(6급1, 7급1)
 - 토지업무 보장인력 : 4명(7급2, 9급2)

- 정원직급조정
 - 6급 정원비율확대(3차) : 6급1, 8급△1
 - 저출산대책담당신설 : 6급1, 9급△1
 - 가축방역담당신설 : 6급1, 8급△1
- 기능직 정원조정
 - 본 청 : 기능9급+1, 기능10급+3
 - 사업소 : 기능9급△1, 기능10급△3

※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 : 12(5급1, 6급6, 7급5, 8급△1, 9급1)

4. 참고사항

- 도 자치행정과-957('06.1.23)호의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
- 도 자치행정과-2155('06.2.24)호의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미시 정원 승인
- 도 자치행정과-3571('06.4.6)호의 보정정원 초과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 승인
- 도 자치행정과-6347('06.7.3)호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
- 도 자치행정과-4359('04.10.1)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시달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, 토지업무 및 교육훈련 전담인력 등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승인정원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원 등을 기관별 및 직급별로 조정하는 개정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,487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,499명으로 하고

- 이중,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된 1,472명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명이 증원된 27명으로 조정하는 것임
-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은
 - 5급1, 6급6, 7급5, 8급△1, 9급1명 등 총12명임
- 6급 담당이상 7명(5급1, 6급6)에 대한 정원 증원 및 직급조정 부서는
 - 5급 : 1명(의회 전문위원 인력보강)
 - 6급 : 6명
 - 혁신정책 담당관실 : 통합 성과관리담당 신설 1
 - 의회사무국 : 전문위원 인력보강 1
 -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: 가축방역담당 신설 1
 - 구미보건소 : 저 출산 대책담당 신설 1
 - 차량등록 사업소 : 건설기계 등록담당 신설 1
 - 시민복지회관 : 사회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정원비율 확대조정 1
- 본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정원을 승인 받고, 행자부 지침에 의거 조정된 것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음